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모욕적 발언·행동 증인 등 처벌〉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02호)

2025. 9.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용기 · 박지혜 · 서영석 · 권칠승 · 문진석 · 한준호
전진숙 · 손명수 · 송옥주 · 임호선 · 윤종균 의원
(11인)

2. 제 안 일 : 2025. 8. 6.

3. 회 부 일 : 2025. 8. 7.

※ 의안번호 : 1200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및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폭력행위 외에도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폭행·협박 외에도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는 점과 「법원조직법」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법에도 국회의 회의에서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증인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여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5조 및 제166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한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벌칙조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여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165조 및 제166조).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생략) <u><신설></u>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u>등의 금지</u>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등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29조에 따라 출석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은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등) ① 제165조제1항을----- ----- ----- ----- ----- ----- -----.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	② 제165조제1항을----- ----- -----

현행	개정안
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 ----- ----- ----- ----- ----- ----- ----- ③ 제1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 「국회법」 제165조 및 제166조¹⁾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 아니

1)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국회법」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벌칙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²⁾는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38조³⁾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의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법원조직법」 제61조⁴⁾는 법정 내외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법원조직법」을 참고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외에 「국회법」에도 추가적으로 증인 등의 모욕적인 발언·행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증인 등의 부적절한 발언·행동으로 인한 국회의 권위 훼손, 질서 문란 등을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의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원조직법」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벌칙조항 신설 및 법정형과 관련하여, 벌칙은 기본적으로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유사 범죄의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증인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이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벌칙조항을 신설할지,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2] 개정안 및 현행법 유사 범죄 비교

구 분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형법」
구성 요건	국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벌금

둘째, 법체계적 측면에서, ① 개정안은 실제 규정은 제165조제2항에서, 벌칙 규정은 제166조제3항에서 나누어 규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절차 등을 다른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데,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 절차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벌칙을 적용·집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내용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⁵⁾

② 개정안은 「국회법」에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⁶⁾ 「국회법」 제129조제3항⁷⁾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증인 등에 대한 불출석 등의 죄, 국회 모욕의 죄, 위증 등의 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벌칙 규정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는 방안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5) 현행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의 경우 제165조에서 실제 규정을, 제166조에서 벌칙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절차 등에 대한 다른 법률에의 위임 내용은 없음. 참고로, 개정안의 죄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고발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라면 해당 법률의 개정이 필요해 보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6) 증인·감정인·참고인의 국회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국회 회의 방해의 한 유형으로 보고,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의무와 국회 회의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신설한 것으로 이해됨.

7) 「국회법」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③ 제1항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셋째, 주요국 의회의 증인 등의 모욕적 발언이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① 미국의 경우 증인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회의장 내 질서규범을 위반하면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경고 조치를 할 수 있고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령할 수 있으며, ② 독일의 경우 증인을 포함한 회의 참석자가 질서 또는 예절을 침해하거나 모욕적 행동을 하면 의장의 명령으로 퇴장될 수 있고, ③ 일본의 경우 증인이 부당한 언동을 하면 위원장은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음.⁸⁾

즉, 주요국 의회의 경우 증인 등의 모욕적 발언이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넷째, 부칙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⁹⁾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8) 「증인 등의 모욕발언 금지 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2025. 8. 18.

9)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017